對 外 秘

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

1. 검토 배경

■ 9. 19.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

- 6. 19. 서울행정법원 본안(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) 1심 판결 선고 ⇨ 전교조 패소
- 6. 23. 전교조 항소 ⇨ 7. 10.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⇨ 7. 22.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

■ 재항고 사건 현재 대법원 계류 중

- 9. 30. 고용노동부장관 재항고 ⇨ 대법원 2014무548호로 접수

■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

-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

2. 결정 내용 ⇨ 재항고 인용 여부

가. BH 입장 분석

■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

-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⇨ '비정상의 정상화'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

■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

■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

-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(ex.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)에 대한 견제·방해가 예상됨

나. 대법원 입장 분석

■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

- 분명 중요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기는 하나,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님 ⇨ 많은 사건 중 하나(one of them)에 불과함

■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⇨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·지원이 절실한 상황임

-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親검찰·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  –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

다. [검토] 재항고 인용 결정 ⇨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

		BH	대법원
재항고 기각 결정 시	전교조	– 최대 현안 ⇨ 상당한 손해	– 단순 사안 ⇨ 별 영향 없음
	상고법원	– 단순 사안 ⇨ 별 영향 없음	– 최대 현안 ⇨ 상당한 손해
재항고 인용 결정 시	전교조	– 최대 현안 ⇨ 상당한 이득	– 단순 사안 ⇨ 별 영향 없음
	상고법원	– 단순 사안 ⇨ 별 영향 없음	– 최대 현안 ⇨ 상당한 이득

■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,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

-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

  – BH ⇨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별다른 손해·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아님

  – 대법원 ⇨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님

3. 결정 시점

가. 고려 사항

■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

- 결정 시점에 따라 劇的 效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
-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·협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 ⇨ 국정 운영의 동반자·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

–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·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임

■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

- 특히 함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상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- [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]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 ⇨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음

– 다만, 12. 11.~14.경에 강○○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⇨ 12. 18.(목) 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12. 10.(수)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

– 한편,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,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,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함 ⇨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하였고,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

- 한편,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

-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**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 우려**

■ 기타 주요 정치 일정 고려

● [BH] 현재 **사자방 국조,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컨트롤하기 힘든 현안**들이 줄지은 상태 + 게다가 **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국정 난맥상이 노출** ⇨ **시간이 갈수록 긴장감·예민함이 고조**될 수밖에 없는 국면

● [국회] 12월 중 법안 처리를 위한 **임시국회 개최 예상**되나,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하여 **원포인트에 그칠 전망** ⇨ 의원들의 **현안에 대한 관심·결집력 등은 현저히 떨어질 것**으로 보임

- 세월호 사건으로 미루어놓았던 **해외 시찰, 연말연시**와 내년 초 **전당대회**(야당의 경우) 등을 대비한 **지역구 관리** 등 ⇨ 12월에 **서울에 머무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**으로 예상됨

● [법무부·검찰]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**VIP의 철저 수사 방침에 따라 분주한 상황**을 맞을 것으로 보임

- 기타 현안에 대한 **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**임

● [상고법원 관련 법안] **빠르면 금주 후반, 늦으면 내주 중에 발의**될 것으로 예상됨

나.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

■ **최우선 고려 요소인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함**

● ①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**선고기일은 12월 중순[12. 10.(수) 또는 12. 18.(목)]**일 가능성이 높고, ②그 **결론은 정당해산결정**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**전제**함

■ **[1안]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**

● 아직 헌재의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**독자적으로**

부각될 수 있음

- 단,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임[High Risk, High Return] ⇨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

● 다만, 이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**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**도 있음

- 하지만 逆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큼 ⇨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 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됨

●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**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**에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함

■ [②안]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

●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·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,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**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**도 있음 ⇨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

- 현재 **헌재 수뇌부는 검찰 출신, 특히 이른바 '공안 검사' 출신**임 ⇨ 박○○ 소장, 안○○ 재판관

- **BH·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**으로 예상됨

●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, **사건의 무게·중요도 등을 고려**하면,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**선고 이후**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려움

●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**12월 이후**에는 이전에 비하여 **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짐**

●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,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

을 서둘러 선고할 수 있음 ⇨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,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음

다. [검토]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⇨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

■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

4. 후속 조치

가. 반발 세력 무마

■ 야당 의원 반발

● 재항고 기각 시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일과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

– 특히 12월에는 해외 시찰·지역구 관리 등으로 서울에 있는 의원 자체가 적을 것 ⇨ 사안에 대한 대처력·응집력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

● 현재 사정 정국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에 대하여 강한 비판에 나설 의지도 부족할 것임

– 현재 수사·재판 중인 의원 수 '야당 34 대 여당 5' ⇨ 결국 야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의지 대상은 대법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

■ 진보 성향 언론 비판

● 다소 비판·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, 다른 현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관심이 분산되어 지속적이고 거센 비판은 없을 것으로 보임

–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직접적으로 BH를 겨냥하는 현안들이 많음 ⇨ '십상시', '문건 유출'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결정 내용에 그리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을 것임

나. 본안 사건 처리

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어차피 **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**되었음
  - 2013. 10. 24. 접수 ⇨ 2014. 6. 19. 선고
  - 곧 **법원 정기 인사 시기**도 다가옴 ⇨ **해당 재판장(민○○ 수석부장판사) 교체(법원장 발령) 가능성** 높음
-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음

■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

-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⇨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
  - '전교조는 문제가 된 **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**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**다시 신고서를 제출**하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**신고를 수리**'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
- 만일 결국 **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**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
  - 결정문에 **결정 이유**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
-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
  -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

다. 협조 요청 사항

■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·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

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

- **상고법원**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⇨ **법무부**의 반대 무마
- **대법관**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⇨ **내년 초** 예정
- **재외 공관**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⇨ **외교부**의 긍정적·전향적 태도 유도
- **한정위헌**결정 관련 적극 협조 ⇨ **헌재**와 의견 대립 시 협조 요청
- **법관 정원**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⇨ 약 30명의 추가 증원 등에 **국회·기재부**의 적극 협조 유도 [끝]